의안번호 제824호

검 토 보 고 서

(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)

I. 의안 제출

○ 제출일자 : 2011. 6. 29

○ 제 출 자 : 중구청장

Ⅱ. 결산의 개요

- 1. 법적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
 - 지방재정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3조
 - 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30조. 제31조
 -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- 2. 결산의 기능
 - 가.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 활용
 - 결산승인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세입·세출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·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 활용
 - 나. 자치단체장의 행·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
 - 결산제도와 절차가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·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시행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
 - 다.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
 - 결산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 명확화
 - 라.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
 -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태와 1년간의

운영 성과를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의 행·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행정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활용 마. 예산집행 책임해제

○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음.

3. 결산서 작성

○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.

4.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효력(의의)

- 세입·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·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,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,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있음.
- 결산승인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사후통제와 사후감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음.
-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, 그 결과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목적이 바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결산승인의 취지임.
-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을 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무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.

Ⅲ. 검토의견

○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, 재무보고서, 결산검사 의견서를

4 (제141회-운영위제1차부록)

참고하여 주시고

- 결산서 2쪽 국내여비(극기훈련) 집행잔액이 2백1십6만원으로 집행율 32%이며
- 결산서 4쪽 일반보상금(의정옴부즈만 선견지견학 참가자실비보상) 집행잔액이 2백9십1만4천9백9십원으로 집행율 31%이며
- 결산서 6쪽 사무관리비(의정활동 홍보 광고료) 예산액 9백만원은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
- 이와같이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와 미집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